2022년도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3. 23.(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34건(안건번호 제2022-12709호~1300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12709호(순번 1번)는 뮤지컬 '▤▤▤▤▤' 영상 교환 및 판매 정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는 점, 잠재적 시장을 포함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12710호~12720호(순번 2번~12번)는 웹하드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72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73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1명의 민원인이 익명으로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뮤지컬 '♣♣♣♣♣'의 영상 교환 및 판매 글을 게시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채증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1번은 □□□ 블로그 이용자 '▥▥▥▥▥▥▥▥▥▥'은 '☆☆☆☆☆☆☆'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현장공연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검토 시점인 2022. 3. 18. 당시 34개의 비공개 댓글이 게시되어 있어, 댓글을 통하여 영상 파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해당 게시물로 직접 접속해 보면 심의일 현재는 해당 게시물의 제목 및 본문 내용을 삭제한 상태이며, 102개의 비공개 댓글이 게시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2022. 3. 22.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의 새 글이 게시되었고, 해당 게시물에도 비공개 댓글이 달린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송사실을 어떻게 인정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됨.

- B 위원: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강나래 전문위원: 이메일로 음원을 전송하여 주겠다는 게시물이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심의위원회는 댓글로 실제 전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송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 사건과 같이 비공개 댓글로 작성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 채증 담당자 등이 직접 댓글을 작성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본문, 비밀댓글 등에 비추어 보면 본 건 게시자가 뮤지컬 '♠♠♠♠♠' 등의 불법복제 영상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D 위원: 해당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지속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음.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12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도구를 통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화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임.

(순번 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3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총 10.4MB 파일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1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총 634MB 파일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순번 2번~12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A, B, C, D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12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3번~30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72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을 51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48분을 직접전송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영화는 2021. 12. 15.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이며,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 중임.
(방송 '며느라기2 · · ing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9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며느라기2 · · ing (2022)'를 49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드라마의 한 회차 전체 분량인 약 25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함. 해당 드라마는 2022. 1. 8.에 방영된 최신 국내 드라마이며, WATCHA 등 OTT 서비스에서 유료로 제공 중임.
(방송 '유비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유비 (2020)'를 25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드라마 한 회차 전체 분량인 약 45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함. 2020. 12. 16.~2021. 02. 03.에 방영한 중국드라마이며, TVING, 웨이브 등 OTT 서비스에서 유료로 제공 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13번~300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30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2709호(순번 1번)는 시정권고의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2710호~12720호(순번 2번~12번)는 시정권고의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2721~13008호(순번 13번~30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3.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3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